

제3차 환경 심의 의결서

- ☐ 안전명 :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평가준비서 심의
- ☐ 안전번호 : 제2019-3호
- ☐ 심의일시 : 2019. 4. 17.(수) ~ 4. 30.(화) / 서면심의
- ☐ 심의의견

◆ 안전의결 : 원안의결 ☐ / 수정의결 ☒ / 보완(재심의) ☐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칸에 ☒ 표시를 바랍니다.

구 분	심 의 의 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적정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계획노선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근접하고, 남대전 통과가 많으므로 수질영향이 확대 될수있는 계획 수립 필요.
3.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 계획의 목적과본 토지이용상황, 입지여건 및 환경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한 대안의선결사유나 취조안을 제시.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 평가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행사항으로 인한 예측가능한 평가항목별 조사자료를 선정하고 조사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인명취득이 적극 참여하도록 공고·공고를 실시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토록 함
6. 기타 사항	· 의견 없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4월 일

심의위원 : 권경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제3차 환경 심의 의결서

☐ **안전명** : 무주 무주 - 설천 도로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평가준비서 심의

☐ **안전번호** : 제2019-3호

☐ **심의일시** : 2019. 4. 17.(수) ~ 4. 30.(화) / 서면심의

☐ **심의의견**

◆ **안전의결** : 원안의결 ☐ / 수정의결 ☒ / 보완(재심의) ☐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칸에 ☒ 표시를 바랍니다.

구 분	심 의 의 결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서 참조
2. 토지이용 구상안	"
3.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6. 기타 사항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5월 일

심의위원 : 박 대 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서면) 통보서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재협의)>

□ 총 괄 의 건

- 동 사업은 국도 30호선 구간 중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 설천면 소천리 구간에 대해 노선(2차로)을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기협의('05.8.10.)하였으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된 후 5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하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임[당초 18.2km(4차로) → 금회 11.04km(2차로)]
- 본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하여야 하며, 결정된 심의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중요도가 큰 중점 평가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상세히 조사하여 평가서에 기술하되, 각 항목별로 현황, 예측 및 저감방안이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갖도록 검토·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공간적 범위의 직접적인 영향권인 사업지구와 간접적인 영향권인 주변 지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고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평가대상지역 설정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평가항목별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 대안(규모, 토지이용 계획, 시기, 공법 등, 2~3개 대안)을 설정한 후 대안별 환경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비교·제시하고 선정안에 대한 선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평가항목

- 평가항목은 중점평가항목 12개, 일반평가항목 4개, 제외항목 5개로 선정
 - * (중점평가항목)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 * (일반평가항목) 기상, 인구, 주거, 산업
 - * (제외항목) 악취, 해양환경,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 조사범위 및 조사지점 확대

- 주변의 환경영향 요인 등을 고려하여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항목별 정량적으로 설정하고, 현황조사 및 영향 등을 예측

○ 평가범위

- 선정된 평가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범위를 설정하고 중점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평가범위를 확대

○ 평가방법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근거자료 등을 수록·제시
-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자료 활용
- 선정된 대안별로 세부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18.12.12.)'에 따라 환경영향을 비교·평가하되, 다음의 항목에 대해 중점 검토하여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제시

항 목	의 건
동 식물상	- 사업예정노선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상 현지조사는 동·식물의 활발한 활동(출현)시기를 포함하여 계절별 조사를 실시한 후 영향예측 및 저감 방안을 검토·제시 - 생태계 연결성의 단절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영향이 예측되는 지역에서의 다양한 저감대책 및 동물의 주요 유입(목표)지점, 공간 조성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 환경계획을 명시
대 기 질 온실가스	- 대기질 영향에 민감한 사업지구 인근 지역(주거지역 등)의 분포현황 및 지역별 영향예측결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격거리, 가구수, 부지정지 후 지형적 차폐여부, 영향적 예측결과, 저감방안 등을 제시 - 계획노선이 마을 등의 정온시설과 인접한 경우 녹지대 등의 완충녹지를 계획하여 구체적인 조성계획(위치, 길이, 높이, 수량 등)을 제시 - 운영시 차량 통행으로 인해 온실가스 발생이 예상되는 바, 차량통행치의 예측치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수립·제시
소음·진동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소음·진동 피해가 우려되는 정온시설(주거지역, 문화재, 가축사육시설 등)의 분포현황을 도면(지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평면도 및 단면도)을 사용하여 명확히 제시 ※ 소음·진동 조사범위 확대 실시(300m→500m) - 각 정온시설별로 소음·진동 유발 공종과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고려하여 소음·진동도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
수 질 수리·수문	- 사업예정노선 및 주변지역 수계현황(수질 등), 향후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여부 및 저감대책 제시

항 목	의 건
	· 특히, 시점부가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질영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영향여부 및 저감대책 마련 -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공사시 하천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하상내 교각설치시 하천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도록 적정 저감대책을 강구·제시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른 수질오염총량 할당가능 여부 제시
지형·지질 토지이용	- 예정노선의 필요성, 이용 수요 등을 조사·예측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하되,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 훼손(생태축 단절, 절·성토고) 등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선계획 수립 · 기존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구간의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사면안정, 녹화 등)을 구체적으로 강구·제시
위락·경관	-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 및 부조화, 경관 차폐 등의 측면에서 경관영향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절·성토고의 축소, 교량화, 차폐식재 계획, 인공 구조물의 색채 및 재질조정 등)을 수립 - 주변 지역에서 조망점(교량, 터널, 최대절·성토사면 등을 포함)을 선정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변 경관영향 분석(주요 조망점의 사업 전·후 비교) 제시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심의 대상여부 검토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성상별)의 적정 보관·관리 및 처리방안 제시 ※ 지장물 철거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량 산정 및 처리계획 제시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함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계획노선에 대한 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영향권(정온시설 및 농경지 통과 구간) 내 주민들이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주민설명회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사업으로 인한 지역적인 환경영향을 알기 쉽도록 전문용어, 수치, 조사결과 등을 순화한 ‘평가요약서’(사진·그림 활용, 전문용어 사용자제, 수치비교 등)를 작성·제공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대상사업의 규모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여, 약식평가 절차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6. 기타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포함시켜야 함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 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직 위 :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
성 명 : 박 대 현 (인)

제3차 환경 심의 의결서

□ 안전명 :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평가준비서 심의

□ 안전번호 : 제2019-3호

□ 심의일시 : 2019. 4. 17.(수) ~ 4. 30.(화) / 서면심의

□ 심의의견

◆ 안전의결 : 원안의결 ☒ / 수정의결 ☐ / 보완(재심의) ☐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칸에 ☒ 표시를 바랍니다.

구 분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계획노선 주변으로 주거시설, 축사 등 정온시설과 보호시설 현황을 파악한 후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대상지역을 최대한 확대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3.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 각 대안은 비교·검토 가능한 통합자료(대안별 노선 도면, 사업내역 비교표 등)와, 대안별 구체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개별자료(도면, 사업내용 및 대안별 환경적 특징 등)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수질 항목은 공사 시 교량·터널·토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수질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황농도 측정,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6. 기타 사항	○ 의견 없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4월 일

심의위원 : 장 성 안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제3차 환경 심의 의결서

- ☐ 안전명 :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평가준비서 심의
- ☐ 안전번호 : 제2019-3호
- ☐ 심의일시 : 2019. 4. 17.(수) ~ 4. 30.(화) / 서면심의
- ☐ 심의의견

◆ 안전의결 : 원안의결 ☒ / 수정의결 ☐ / 보완(재심의) ☐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칸에 ☒ 표시를 바랍니다.

구 분	심 의 의 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대상지역의 설정은 타당하나, 설천면 청량리는 반디랜드·태권도원과 백운산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관광과 대표관광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관광 요충지로 생태계 조사와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2. 토지이용 구상안	· 계획노선의 지형 및 주변 생태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3.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 대안으로 선정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범위·방법은 사업의 특성과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선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공고·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6. 기타 사항	· 대상지역 내 생태계 특성 및 법정보호종 서식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사 중 또는 운영 중 생태계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4월 29 일

심의위원 : 안 병 랑 (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제3차 환경 심의 의결서

- ☐ 안전명 :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평가준비서 심의
- ☐ 안전번호 : 제2019-3호
- ☐ 심의일시 : 2019. 4. 17.(수) ~ 4. 30.(화) / 서면심의
- ☐ 심의의견

◆ 안전의결 : 원안의결 ☒ / 수정의결 ☐ / 보완(재심의) ☐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칸에 ☒ 표시를 바랍니다.

구 분	심 의 의 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주변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토지이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3.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용이한 선형 및 교차로 형식 등을 검토 후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함 · 교량 및 터널 등의 설치로 인한 주변환경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대안 선정이 필요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 준비 서에 제시된 항목을 충실히 이행하고, 도로 주변에 위치하는 마을 및 하천 등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점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사후영향평가사항도 충실히 이행하여야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공간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해관계 주민 등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함
6. 기타 사항	· 계획노선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으로 사전에 우리군 환경과 수계팀과 협의가 필요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4월 30 일

심의위원 : 장 우 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제3차 환경 심의 의결서

☐ 안전명 :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평가준비서 심의

☐ 안전번호 : 제2019-3호

☐ 심의일시 : 2019. 4. 17.(수) ~ 4. 30.(화) / 서면심의

☐ 심의의견

◆ 안전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칸에 ☒ 표시를 바랍니다.

구 분	심 의 의 결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특이사항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특이사항없음
3.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특이사항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특이사항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특이사항없음
6. 기타 사항	통계자료는 최신으로 update 하여 검토 필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4월 25 일

심의위원 : 이재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제3차 환경 심의 의결서

☐ 안전명 :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평가준비서 심의

☐ 안전번호 : 제2019-3호

☐ 심의일시 : 2019. 4. 17.(수) ~ 4. 30.(화) / 서면심의

☐ 심의의견

◆ 안전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칸에 ☒ 표시를 바랍니다.

구 분	심 의 의 결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도로 노선 주변 도시계획 및 인근 도로 건설계획 등 상위·관련 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노선 안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하고 또한 터널(L=550m)이 계획되어 있어 공사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어 짐.
2. 토지이용 구상안	- 계획 노선이 생태자연도 2, 3 등급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경관보전 지역 1등급이 일부 분포하고 또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3등급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3.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 의견없음.

구 분	심 의 의 견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중점평가항목으로 수질 및 수리·수리수문, 토지이용 포함 7개를 선정하였고, 그 외 현황 1개, 제외 5개 등을 선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계획노선 안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는바, 도로, 교량 및 터널 공사시 초기우수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함. - 계획노선 안에 일부 비탈면 경사가 발생할 수 있는바, 비탈면 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비탈면 식생은 주변 식생에 이질감이 없는 자연천이를 유도하도록 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2004~2005) 시 현지조사 결과 범종보호종인 수달 등 6종이 확인되었고, 그 이후 약 14년 이 지나 그 당시 보다 생태계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재협의 시 철저한 동·식물상을 조사하여 이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야 함. -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 현황(이격 거리 등)을 파악하고, 대기, 소음·진동, 경관, 조명 등의 영향 여부를 제시하여야 함. - 환경질 측정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점을 선정·조사하여야 함. - 사업의 시행으로 절·성토 구간, 교량, 인공구조물 설치 등 경관적 영향이 예상되는 지점을 조망점으로 선정하고, 원경·중경·근경으로 구분하여 경관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설명회 시, 도표,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이해 당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현수막 설치, 문자발송 및 마을 이장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주요 이해 당사자를 파악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을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공고·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함.
6. 기타 사항	- 환경영향평가시 4차로로 계획된바, 급회 2차로로 축소되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존 도로 주변에 도로로 인한 생활권을 가진 이해당사자, 특히 주유소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함. - 모든 절차 및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심의위원 : 심재왕 (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제3차 환경 심의 의결서

- ☐ 안전명 :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평가준비서 심의
- ☐ 안전번호 : 제2019-3호
- ☐ 심의일시 : 2019. 4. 17.(수) ~ 4. 30.(화) / 서면심의
- ☐ 심의의견

◆ 안전의결 : 원안의결 ☒ / 수정의결 ☐ / 보완(재심의) ☐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칸에 ☒ 표시를 바랍니다.

구 분	심 의 의 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원안 적용
2.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 없음
3.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주민 편익을 최대한 반영 하겠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공식중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취하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주민설명회시 상세하게 설명해줄것임
6. 기타 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4월 일

심의위원 김봉중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제3차 환경 심의 의결서

☐ 안전명 :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평가준비서 심의

☐ 안전번호 : 제2019-3호

☐ 심의일시 : 2019. 4. 17.(수) ~ 4. 30.(화) / 서면심의

☐ 심의의견

◆ 안전의결 : 원안의결 ☐ / 수정의결 ☐ / 보완(재심의) ☒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칸에 √ 표시를 바랍니다.

구분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 구상안	
3.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 렴계획	2005년 8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4차로 차선평을 2018년 현재 2차로 차선평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 에 있어 무주군 설천면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나, 차선평 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떠 한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 역 주민들의 강한 불만은 물론 본 사업에 대한 불 신이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계획변경에 있어 주민 공청회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임.

	오랜기간 군민들이 정부에 요청하여 확정된 국가 사업을 변경함에 있어,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더욱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사업계획 변경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반드시 공청회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실하게 수렴되고 또한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 보고서에 대안을 제시하여 할 것임
6. 기타 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4월 일

심의위원 : 서병국 (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